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571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4. 3.

발 의 자 : 전재수 · 박재호 · 김해영

최인호 · 김정우 · 박주민

정인화 · 유승희 · 이재정

제윤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, 그 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는바, 위탁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법령에 구체적인 위탁범위나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업무를 선불식 할부업자 관련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필요한 경우”를 “제18조제5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6조(사무의 위탁)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<u>필요한 경우</u> 사무의 일부를 제4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46조(사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18조제5항</u> <u>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</u> <u>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</u> <u>으로 정하는-----</u> ----- -----.</p>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